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5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누362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군수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7구합24594 판결
변 론 종 결	2018. 9. 14.
판 결 선 고	2018. 10.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9. 원고에게 한 2,035,238,560원의 부과처분 중 176,813,18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2-05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이는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5, 6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용달

판사 김태현

판사 곽병수